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 2차』 근린생활시설 분양광고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e모델하우스 및 사전 예약제 운영안내

-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 2차 견본주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e모델하우스 (<http://www.harrington-bwd2.co.kr>) 를 통해 사전예약 관람을 병행 운영함.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 에 근거하여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2차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 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http://www.harrington-bwd2.co.kr>) 를 통해 분양일정안내, 청약안내, 상품 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음.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안내 사항

- 견본주택은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 정도에 따라 예약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폐쇄될 수 있음.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 주택 방문가능 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 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일 이후 검수 기간 내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의 견본주택 관람은 개별 안내 예정임.
- 견본주택 관람은 당첨자 외 동반자 1인까지만 가능함.(미성년자 동반 불가하고 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기간 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됨.
 - ※ 코로나 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 최근 14일 이내 해외 입국자
 - ※ 견본주택 입장 전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 체온이 37.3℃ 이상인 경우 (열화상 카메라 및 비 접촉 체온계 측정)
 -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기침이나 목 아픔) 등 코로나 19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 ※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 소독제, 비 접촉 체온계, 전신 소독기 등)

당사가 고지한 해당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관람이 불가함.

- 분양 상담전화(☎ 053 - 752 - 2400),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 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중구청 건축주택과 분양 신고 2021-건축주택과-분양신고-6)로 분양 신고 필.

- 본 건축물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 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0.224g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03-4 번지 일원

- 대지면적 : 8,263.34 m² / 아파트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전체 면적

- 건축물 연면적 및 용도 : 95,020.35 m² / 아파트 , 오피스텔 , 근린생활시설

- 본 건축물은 주거복합 단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이 복합되어 계획됩니다.

- 입점 예정일(준공예정일) : 2024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준공 및 입점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단축(변경) 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암반, 문화재발견, 정부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급규모 : 근린생활시설 42 실(지상1층, 지상2층) 금회공급 (근린생활시설 계약면적 5304.3600 m²)
 - 지하 4층, 지상 42 ~ 44층 3개 동 중 아파트 총 419 세대, 오피스텔 7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본 건축물은 주거복합단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이 복합되어 계획됨)
- 주차대수 : 총 727 대 (아파트 573 대, 오피스텔 110 대, 근린생활시설 44 대(지상))

■ 건축물의 층별 용도

- 지하 4 층 ~ 지하1층 : 기계,전기실 / 아파트 주차장
- 지상 1 층 :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 부대시설
- 지상 2 층 :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 오피스텔용 주차장
- 지상 3 층 : 오피스텔용 주차장
- 지상 4 층 : 부대복리시설
- 지상 5 층 ~ 44층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지상 20층 : 피난안전구역

■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 중심상업지역, 도시지역, 방화지구, 상대보호구역

■ 본 근린생활시설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물건으로 분양대금의 관리자 및 분양사업자는 (주)코리아신탁으로 동일함.

■ 공급면적 및 분양대금

구 분	층	호실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분양금액				계약금(10%)	대금납부			잔금(6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계약시	중도금 (30%)			
															1 차	2 차		3 차
		101	53.3897	17.8828	71.2725	43.1531	114.4256	9.9763	249,835,200	449,240,727	44,924,073	744,000,000	74,400,000	74,400,000	74,400,000	74,400,000	446,400,000	
		102	75.1322	25.1656	100.2978	60.7268	161.0246	14.0390	351,582,600	632,197,636	63,219,764	1,047,000,000	104,700,000	104,700,000	104,700,000	104,700,000	628,200,000	
		103	67.9198	22.7497	90.6695	54.8973	145.5668	12.6913	310,615,000	558,531,818	55,853,182	925,000,000	92,500,000	92,500,000	92,500,000	92,500,000	555,000,000	
		104	52.8570	17.7045	70.5615	42.7225	113.2840	9.8767	247,484,600	445,014,000	44,501,400	737,0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442,200,000	
		105	49.0812	16.4398	65.5210	39.6709	105.1919	9.1713	229,687,200	413,011,636	41,301,164	684,0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410,400,000	
		106	52.8570	17.7045	70.5615	42.7225	113.2840	9.8767	247,484,600	445,014,000	44,501,400	737,0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442,200,000	
		107	49.0815	16.4398	65.5213	39.6709	105.1922	9.1713	229,687,200	413,011,636	41,301,164	684,0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410,400,000	
		108	52.8570	17.7045	70.5615	42.7225	113.2840	9.8767	247,484,600	445,014,000	44,501,400	737,0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442,200,000	
		109	48.0683	16.1004	64.1687	38.8520	103.0207	8.9819	224,986,000	404,558,182	40,455,818	670,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402,000,000	
		110	63.3600	21.2224	84.5824	51.2117	135.7941	11.8393	289,795,400	521,095,091	52,109,509	863,0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517,800,000	
		111	47.5920	15.9409	63.5329	38.4670	101.9999	8.8929	222,635,400	400,331,455	40,033,146	663,000,000	66,300,000	66,300,000	66,300,000	66,300,000	397,800,000	
		112	45.7114	15.3110	61.0224	36.9470	97.9694	8.5415	213,904,600	384,632,182	38,463,218	637,0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382,200,000	
		113	42.8090	14.3389	57.1479	34.6010	91.7489	7.9992	200,472,600	360,479,455	36,047,946	597,0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358,200,000	
		114	51.8457	17.3656	69.2113	41.9051	111.1164	9.6878	242,783,400	436,560,545	43,656,055	723,000,000	72,300,000	72,300,000	72,300,000	72,300,000	433,800,000	
1 층		115	58.7619	19.6823	78.4442	47.4952	125.9394	10.9810	275,020,200	494,527,091	49,452,709	819,000,000	81,900,000	81,900,000	81,900,000	81,900,000	491,400,000	
		116	34.6226	11.5968	46.2194	27.9842	74.2036	6.4695	158,161,800	284,398,364	28,439,836	471,0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282,600,000	
		117	41.8743	14.0258	55.9001	33.8456	89.7457	7.8245	191,406,000	344,176,364	34,417,636	570,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342,000,000	
		118	51.8655	17.3723	69.2378	41.9211	111.1589	9.6915	237,074,800	426,295,636	42,629,564	706,0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423,600,000	
		119	51.7660	17.3389	69.1049	41.8407	110.9456	9.6729	236,739,000	425,691,818	42,569,182	705,0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423,000,000	
		120	48.7795	16.3386	65.1181	39.4268	104.5449	9.1148	222,971,200	400,935,273	40,093,527	664,0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398,400,000	
		121	49.5170	16.5858	66.1028	40.0229	106.1257	9.2526	226,329,200	406,973,455	40,697,346	674,0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404,400,000	
		122	119.7601	40.1138	159.8739	96.7981	256.6720	22.3781	560,450,200	1,007,772,545	100,777,255	1,669,000,000	166,900,000	166,900,000	166,900,000	166,900,000	1,001,400,000	
		123	63.4356	21.2478	84.6834	51.2728	135.9562	11.8543	290,131,200	521,698,909	52,169,891	864,000,000	86,400,000	86,400,000	86,400,000	86,400,000	518,400,000	
		124	66.3300	22.2173	88.5473	53.6123	142.1596	12.3943	303,227,400	545,247,818	54,524,782	903,000,000	90,300,000	90,300,000	90,300,000	90,300,000	541,800,000	
		125	62.0409	20.7806	82.8215	50.1456	132.9671	11.5928	290,467,000	522,302,727	52,230,273	865,000,000	86,500,000	86,500,000	86,500,000	86,500,000	519,000,000	
		126	45.8741	15.3655	61.2396	37.0785	98.3181	8.5719	214,576,200	385,839,818	38,583,982	639,0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383,400,000	
		127	77.7299	26.0357	103.7656	62.8265	166.5921	14.5244	364,007,200	654,538,909	65,453,891	1,084,000,000	108,400,000	108,400,000	108,400,000	108,400,000	650,400,000	
		128	29.2823	9.8081	39.0904	23.6679	62.7583	5.4716	137,006,400	246,357,818	24,635,782	408,0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244,800,000	
		소계	1,554.20	520.5797	2,074.7812	1,256.2085	3,330.9897		7,216,006,200	12,975,448,909	1,297,544,891	21,489,000,000	2,148,900,000	2,148,900,000	2,148,900,000	2,148,900,000	12,893,400,000	

구분	층	호실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분양금액				대금납부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계약금(10%)	중도금(30%)			잔금(60%)
														1차	2차	3차	
											계약시	2022.06.14	2023.01.16	2023.07.14			
2층	201	89.4726	29.9689	119.4415	72.3177	191.7592	16.7186	253,193,200	455,278,909	45,527,891	754,000,000	75,400,000	75,400,000	75,400,000	75,400,000	452,400,000	
	202	110.8273	37.1217	147.9490	89.5780	237.5270	20.7089	313,637,200	563,966,182	56,396,618	934,000,000	93,400,000	93,400,000	93,400,000	93,400,000	560,400,000	
	203	53.4648	17.9080	71.3728	43.2138	114.5866	9.9903	151,445,800	272,322,000	27,232,200	451,0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270,600,000	
	204	35.3650	11.8455	47.2105	28.5843	75.7948	6.6082	100,068,400	179,937,818	17,993,782	298,0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178,800,000	
	205	122.9241	41.1735	164.0976	99.3554	263.4530	22.9693	321,024,800	577,250,182	57,725,018	956,000,000	95,600,000	95,600,000	95,600,000	95,600,000	573,600,000	
	206	41.6100	13.9372	55.5472	33.6319	89.1791	7.7751	108,799,200	195,637,091	19,563,709	324,0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194,400,000	
	207	40.6610	13.6194	54.2804	32.8649	87.1453	7.5978	106,112,800	190,806,545	19,080,655	316,000,000	31,600,000	31,600,000	31,600,000	31,600,000	189,600,000	
	208	52.1937	17.4825	69.6762	42.1864	111.8626	9.7528	136,334,800	245,150,182	24,515,018	406,0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243,600,000	
	209	50.7000	16.9820	67.6820	40.9791	108.6611	9.4737	132,641,000	238,508,182	23,850,818	395,0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237,000,000	
	210	50.7000	16.9820	67.6820	40.9791	108.6611	9.4737	132,641,000	238,508,182	23,850,818	395,0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237,000,000	
	211	52.0438	17.4321	69.4759	42.0652	111.5411	9.7248	135,999,000	244,546,364	24,454,636	405,0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243,000,000	
	212	82.5082	27.6362	110.1444	66.6886	176.8330	15.4173	233,381,000	419,653,636	41,965,364	695,000,000	69,500,000	69,500,000	69,500,000	69,500,000	417,000,000	
	213	47.0986	15.7756	62.8742	38.0682	100.9424	8.8007	123,238,600	221,601,273	22,160,127	367,0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220,200,000	
	214	91.1845	30.5423	121.7268	73.7014	195.4282	17.0385	258,230,200	464,336,182	46,433,618	769,0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461,400,000	
	소계	920.75	308.4069	1,229.1605	744.2140	1,973.3745		2,506,747,000	4,507,502,727	450,750,273	7,465,000,000	746,500,000	746,500,000	746,500,000	746,500,000	4,479,000,000	

■ 공통사항

-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되어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생기거나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금액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지분은 용도별,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하였습니다.
- 총 분양금액은 층,향,구조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분양금액은 각 호실 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구,등록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전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진입통로,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등)은 전체공용으로 하며, 각 호별로 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대상은 근린생활시설 42호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신청시 세부사항은 분양사업장으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 11조 제 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시 납부합니다.
- 중도금은 지정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점 지정기간 내에 완납 후 입점하여야 합니다.
(단, 납부일인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 근린생활시설 전체 호실 (42호실)은 업종을 지정하여 공급하지 않습니다.
- 본 건축물은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라 2020. 02. 21 이후 부동산 실 거래 신고 거래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으로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모집 공고일 (2021. 06. 03)**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국내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재외국민,외국 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 및 법인
- 거주지역 및 청약 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은 호실별로 접수를 받으며 **건본주택에서 공개추첨에** 의해 당첨자를 추첨합니다.
- 예비 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 계약 호수 발생시 선착순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신청자격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분양공급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공급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청약일시	청약장소	당첨자 발표일/장소	계약기간	청약금 환불기간
2021. 06. 07 10:00 ~ 17:00	건본주택내 (공개추첨)	2021. 06. 09 건본주택 내 공개추첨 18:00	2021. 06. 10 09:00 ~ 17:00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금융기관 영업일 기준 7 영업일 이후

■ 청약 신청금 납부 방법

구분	청약 신청금	금융기관	청약 신청금 납부계좌번호	예금주	수납방법
근린생활 시설	1 억원	대구은행	504-10-377803-4	(주)코리아 신탁	지정계좌로 이체

※ 무통장 입금시, 상기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시기 바라며, 입금 후 반드시 입금 확인증을 제출 바랍니다.

■ 청약 신청 방법

- 건본주택 방문 접수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 사항
본인 신청 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약 신청서 (건본주택에 비치) 2. 본인도장 또는 서명 3. 본인 확인증 : 주민등록증(본인),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등록증 등 4. 청약 신청금 (지정계좌 무통장 입금증) 5. 청약 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 부(청약자 본인 명의) 6. 주민등록 등본 1 통
제3자 대리 신청 시	<p>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 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 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약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 부, 인감증명서 1 부 2. 청약자의 인감도장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3.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4. 위임장 1 부 (건본주택에 양식 비치), 인감도장
법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약 신청서 (건본 주택에 비치) 2. 법인 인감 및 법인 인감 증명서 1 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3. 사업자 등록증 4. 청약 신청금(지정계좌 무통장 입금증) 5. 청약 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 부(청약자 법인 명의) 6. 법인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등)지참]

※ 청약금 환불은 청약 신청 시 환불계좌로 등록한 본인(법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청약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 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음)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제 증명 서류는 청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 분에 한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확인은 건본주택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금 환불 방법**

- 환불기간 : 당첨자 계약일 이후 금융기관 영업일 기준 7 영업일 이후 (단,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환불방법
 - 낙첨자의 청약 신청금 환불은 금품분실 및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약 시 제출한 청약자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처리합니다.(환불계좌 오류 등 송금불능 사유 발생시 환불일자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중 미 계약자는 일괄 환불되고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 바랍니다.
 - 환불 시 청약 신청금에 대한 경과이자 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정당 당첨자의 청약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며, 청약 신청금은 청약 시 제출한 청약자 명의의 계좌 무통장 입금 처리합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일시 및 당첨자 발표 : 2021년 6월 9일 (18:00) • 발표장소 : 건본주택 내 (약도 및 전화번호 참조)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 계약 호수 발생시 선착순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2021년 06월 10일 (09:00~ 17:00) • 계약체결 장소 : 건본주택 내 (약도 및 전화번호 참조)
- 계약 시 구비사항.

구 분	구비사항
본 인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계약자 인감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 1 부, 신분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 증 사본 1 부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 1 부) . 외국인 인 외국인 등록증 사본 1 부(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 부)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증
법 인	. 법인 등기부 등본 1 부 . 사업자 등록증 1 부 . 법인 대표이사 본인 계약 시 신분증 .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지참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증
제 3 자 대리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자(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 증명서 1 부 . 계약자의 인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 통(건본 주택 내 양식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 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청약 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건수 수량에 맞추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계좌	대구은행	504-10-377803-4	(주)코리아 신탁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101호 : 1010101 홍길동

-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가능, 건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에 상기 해당금융기관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

계 약 금	중 도 금			잔 금
10 %	1회 (10 %)	2회(10 %)	3회 (10%)	60 %
계 약 시	2022.06.14	2023.01.16	2023.07.14	입점 지정일

- 분양대금(계약금) 납부 : 동 호수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 건본주택 제출(건본주택 수납불가 (예시 : A201 호 당첨자의 "홍길동" 의 경우 , 입금자명을 "A201홍길동" 으로 기재
-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 계약 체결시 세대별 별도 생성되어 계약서에 명시될 예정이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예금주 (주)코리아신탁 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의한 분양대금 관리자 겸 분양사업자로 분양수입금을 관리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며, 청약금은 위약금으로써 몰취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체에서 별도의 통보 없이 수의 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 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는 경우 공급계약서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청약 신청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확인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고 개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근린생활시설의 배치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진동,약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며, 이로 인해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관리비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을 준수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 아파트, 오피스텔의 입주시기와 근린생활시설의 입점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안내

- 본 근린생활시설의 중도금 대출시 무이자 조건으로 총 분양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가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공급금액의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시행위탁자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점 지정기간 내 입점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점 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납부하며, 입점 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근린생활시설의 입점 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점 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납부하며, 변경된 입점 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 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하며, 신탁사 및 시공사는 중도금 대출과 전혀 무관합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근린생활시설은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실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 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이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점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이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근린생활시설의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 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 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 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사와 분양 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실 계약자,외국인,법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안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점자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공통 유의 사항

- 본 입점자 모집공고의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본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m²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형별 면적(m²) X 0.3025)
-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되어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호별 대지지분은 시설별 대지지분에서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향후 지적 확정 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지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당첨자 취소 여부를 별도 통보 하지 않습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점일 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사용승인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호실 내.외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점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공급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등본 첨부)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및 주변 환경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 및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배치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으로 인한 소음, 진동, 악취,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 등으로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을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오피스텔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므로 계약자는 근린생활시설 계약면적 외의 시설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해당 시설계획(건축,구조,기계,전기 등) 은 추후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아파트(공동주택) 입주차량과 근린생활시설 등 이용차량의 원활한 동선 분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설계 변경 또는 차량 차단기 설치로 인한 주차대수 및 구획이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구조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해 향후 구조형식과 구조부재의 (기둥, 보 등) 크기, 위치, 개수 등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층고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계 변경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관련 설계 변경 및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취득세는 납부 원인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3 제 2항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긴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 1-조 제2항 제 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동 근린생활시설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로 운영하여 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용도제한 업종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옥외 광고물 설치 시에는 관할지자체 기준이나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를 확인하시고, 관계법령 확인 후 설치 전 관할 지자체의 승인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 사용에 대한 제반 사항 (영업허가, 상가관리, 용도변경 등)은 매수자의 책임이며, 사업주체는 일체의 업종 보호 책임이 없습니다.
- 분양대금 중 잔금납부 개시일은 입점 지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건축법 제 22조 3항의 단서에 따라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입점하는 경우에는 잔금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점일에 받으며, 잔금에 50 %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용승인일 이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실 입점일이 입점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 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완납 후 입점할 수 있으며, 이때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향후 발생 가능한 도시계획시설 (철도 등)의 소음 및 진동 등 모든 민원에 대하여 향후 관할 관청 등으로 어떠한 민원도 제기 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 인쇄물 (카달로그 등)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및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 시설물, 단위실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여건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본 공사시 설치 될 필요 설비 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지상 1층에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배치되어 쓰레기 차량 출입 및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생활환경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도로 인접 및 주변 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포장, 주변환경, 드라이에어리어(DA), 부지 고저 차등은 실제 시공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상 및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 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공개공지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서 입점자 임의로 휨스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없으며, 인허가 협의에 따라 디자인, 범위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도로와 접한 단지내 보도는 입점민 및 인근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도이며, 입점 후 외부인의 보도 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등은 공사 시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법적 기준내),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점시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각 실 출입구의 사이즈, 위치 및 개수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은 복합건축물로서 아파트,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으며, 건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보행 동선 및 입면 디자인 등이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 변경 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분양사업자가 관련 설계 변경 및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 시설의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공간을 공동사용하며 배관 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 및 공용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량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등의 시설이 입점하는 경우 배수구 연결 시 그리스트랩을 설치하여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조치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위치에 따라 일부 호실에 공용 옥내소화전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호실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 시 일부 호실 내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문이 설치되어 점검구 개폐를 위해 화물 적재 및 가구설치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의 생활환경 여건에 따라 창호에 결로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 실 등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 내.외부 창호 디자인, 프레임 개수 및 사이즈, 유리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 등은 공사 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별, 층별, 위치별로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구조부에 적용되는 마감두께에 따라 근생 전면부 폭이 다소 경감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채광이 다소 간섭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 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출입구, 창틀 분할 및 색, 색채, 마감재 패턴, 줄눈, 상가천장, 나간의 형태 및 높이, 단지의 명칭, 브랜드, 동 표시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점 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 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전항의 경우 입점 이후 '수분양자(입점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점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점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 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점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집니다.
- 근린생활시설 외부창호는 추후 본 공사 협력 시공업체 선정 결과 및 입점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호실별, 층별, 재질, 사양 및 디자인을 포함한 제반 사항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관리 및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 출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호실간 경계벽은 경량 벽체로 시공되어 소음 및 충격음 전달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으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내부벽체는 대부분 경량벽체로 시공되어지며 이에 따라 경량 벽체에 부착물 설치 시 경량 벽체용 전용철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호실 천장 내부에 공용배관 및 덕트, 상부실 배관 등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이 설치되어 소음발생 및 유지보수용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철거 및 이동할 수 없습니다.
- 당 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부 외부마감은 페인트, 강판,타일,석재,유리창호 등으로 마감 되며, 두께 및 제품사양 등은 공사 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별, 층별, 위치별로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입점자에 의해 벽체 철거/변경시 벽체에 설치된 기구, 배관,배선 등은 입점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공사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입면 외장재에 따라 일부 실은 일조 및 통풍의 불리, 우천시 소음, 조망권 제한, 채광간섭, 빛의 산란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인입장비 포함), 소화전 등의 위치 및 우.오수맨홀의 위치는 시공시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매장 출입문 근처 우,오수 관련 구조물 및 전기 인입을 위한 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일부가 돌출 및 셋백으로 인하여 일조 및 통풍에 불리할 수 있으며,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지 및 건물 내/외부 공개공지, 드라이에어리어(DA), 차량 진출입, 자전거 거치대 등에 의하여 소음 및 진동,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1층의 일부는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층고가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하자 판정은 건설산업 기본법 및 관계 법규의 규정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본 건물의 명칭, 동표시, 외부 색채 및 경관조명 계획은 향후 관계 기관의 심의/자문 결과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입점 시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 개선과 품질을 재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및 공법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준공시까지 근린생활시설의 각 실의 면적, 실 위치, 보행동선, 입면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의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계법규(건축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이후 입점자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주차부스(주차관제 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시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은 복합건물로서 주차장 진출입구에 별도 구획표기를 하였으나 원활한 교통통제 및 운영을 위하여 혼용하여 이용될 수 있으며, 용도별 주차구획도 혼용하여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차장 사용구획 및 주차대수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후 경관조명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점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일부 실은 경관 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부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 체결 후 허가 도면상 토지의 지형지물에 따라 경사도에 의한 각 호실 및 복도간의 단차가 발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점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에 미 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 배치 특성상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근린생활시설 등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소음,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공개공지, 조경 및 조경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점자 부담입니다.
- 건물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 납부의 주체는 입점자 부담입니다.
-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할지자체의 기준 및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를 확인하시고 관할 지자체의 승인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물 (간판 등) 설치 및 전원공사는 입점자 부담 입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상가 옥상에 설치되는 배기팬 등의 설비에 의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와 관련된 소음, 진동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급수 및 가스공급을 위한 배관이 1개소 제공되며, 캡마감 이후 급수계량기 및 가스 계량기 설치에 입점자 부담입니다.
- 배수배관이 점포별 1개소 제공되며, 지정된 위치 외 이후 이동 설치에 입점자 부담입니다.
- 공용 메인 배관(급수,소화,배수,가스,냉난방 등)이 각 점포 천정내부에 시공될 수 있습니다. 점검구가 설치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냉난방을 위한 배관공사 등 필요한 설비시설은 입점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2층 실외기 공간은 외부와 별도 구획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치 전 반드시 관리주체와 협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외기 노출로 인한 아파트, 오피스텔 입주자의 민원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민원 책임은 설치 주체인 입점자에게 있습니다.
- 배치 상 기계/전기실, 발전기실, 급 배기구, 정화조, 정화조배기탑 및 생활폐기물 보관소 인접실에는 냄새, 소음, 진동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에,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계실 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 변경 및 최종 확정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오수.도시가스.한전 등) 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지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용도별로 설치하지 않고 통합으로 설치된 부분(전기,공용부분의 상하수도, 배기시설,생활폐기물 보관소 등) 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및 관리비는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될 예정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승인 하여야 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가스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고, 부지 내에 설치시 향후 정압실 건축물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는 입점자에게 있습니다. 가스 정압기로 인해 시각적 간섭 및 공간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복도 및 외부 일부에 가스관이 노출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에 지하주차장 진.출입램프가 설치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 점포의 경우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과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상층부에는 오피스텔, 공동주택(아파트) 부대시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추가 설비 시공 등 근린 생활시설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의 민원이 발생 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차에 따른 계단 및 램프, 옹벽, 안전난간의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부공간은 특정 상가가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조경 CG 에 표현된 시설은 사업주체의 계획의 이해를 돕기 위한 디스플레이 연출로 사업주체의 계획에 따라 설치기간 형태 수량 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단지 외곽부의 녹지에 식재 계획으로 상가의 간판을 가릴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전 녹지 및 가로수 식재구간의 위치를 확인하고 충분히 인지한 상태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로비, 엘리베이터 홀, 복도 등 공용공간은 추후 설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실 내부에 돌출기둥이 존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전 기둥의 크기와 위치를 확인해야 하고, 충분히 인지한 상태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둥, 벽, 등의 구조물은 계약면적에 포함됩니다.
- 일부 실은 계약 여건에 따라 분리되어 전체 실수가 증가할 수 있으며, 실 분리 및 통합을 고려할 시 실간벽의 경량 벽체 여부, 실 내부 기둥위치 등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및 관련 시설은 불특정다수가 사용할수 있는 곳으로 계약자가 임의로 훼손 또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 상가 문짝은 강화유리도어로 시공되며 강풍 및 우천에 의한 문 열림, 우수 유입 등의 하자 발생에 대한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가 불가합니다.
- 지상 1층 상가의 경우 외부 도로 경사에 의해 동일상가 출입문(2개소 이상인 경우) 에 단차가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도시가스 배관이 근린생활시설의 복도 및 외부 일부에 노출되어 설치 될 수 있고 또한 지역 정압기가 설치되어 시각적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통신 단자함, 전기 분전함 등 전기/통신/소방설비 시설물의 타입과 위치 수량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위치 및 형상은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미술작품 설치로 인해 일부 호실의 조망권, 일조권,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입점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외부의 경사, 바닥레벨차이 등에 따라 실-실, 실-복도 간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층고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권자 및 협의부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각 실 출입구의 규격,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개수 또한 변경되어 추가 또는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이 분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을 짐.(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음).
-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함
- 본 근린생활시설은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에 해당되므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신고일 현재 대구지역의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분양을 신청한 자 중에서 분양 받을 자를 우선 선정한다.
- 위 조항은 최초 공개모집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한다.

■ 관리형 토지 신탁계약

- 본 계약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양공급자(매도자) 겸 시행수탁자"갑",시행위탁자"정" 책임준공 시공사"병" 간 관리형 토지신탁(이하 "신탁계약" 이라 함) 이 체결되어 있음을 "을" 은 인지하고 다음 각호의 내용을 확인한다.
- (1) "갑" 은 분양공급자(매도자)의 지위에 있으나, 신탁재산의 보전 및 분양대금 완납자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하며 본 사업관련 실질적 사업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시행위탁자인 "정" 에게 있음을 "을" 은 인지함.
 - (2) "을" 은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갑"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 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갑" 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3) "갑" , "병" 과 "정" 의 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일부 호실의 소유권이 "갑"에서 "을" 로 이전된 경우, 해당 이전된 호실을 포함함)와 동시에 공급계약 상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행운레인보우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된다. (소유권 이전,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의무 포함)
 - (4)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갑" 은 분양공급자(매도인)으로서의 일체의무(공급계약 해제/해지시 분양대금 반환의무, 소유권이전관련 업무입주지연 지체상금,하자보수책임 등)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동 의무는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정" 이 부담한다.
 - (5) "을" 은 "갑" 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시공상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병" 및 "정" 에게 있다.
 - (6) 분양계좌로 입금된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 (7) "갑" 은 신탁계약에 의거 현존하는 신탁계좌의 잔액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신탁재산 범위 내) 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탁자가 한다.
 - (8)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한 "갑" 의 분양대금반환 의무 등은 현존하는 신탁계좌의 잔액범위 내로 한정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갑" 의 고유 계정에 속하는 재산으로 위 의무를 하지 아니한다.
 - (9) 코리아신탁(주)의 사전승인 없이, 위탁자 (주) 행운레인보우 와 매수인("을") 간에 또는 시공사 진흥기업(주), 효성중공업(주) 과 매수인("을") 간에 "별도의 특약" 이 설정된 경우, 해당 특약은 코리아신탁(주) 에 대해서는 일체의 효력이 없다.
 - (10) 본 조의 내용은 다른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 분	회 사 명	감 리 금 액
건 축	(주)천일건축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사무소	2,146,963,300
전 기	(주)렘코 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	552,745,115
소방/정보통신	(주) 한동 엔지니어링	740,000,000

※ 감리 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회 사 명	주 소	법인등록번호
시행수탁자	코리아신탭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대치동, 해성2빌딩)	110111-2937831
시행위탁자	(주) 행운레인보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73길 48, 4층 (수성동 4가)	170111-0653528
시 공 사	진흥기업 (주)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 (송도동, 송도밀레니엄 807호)	110111-0006349
	효성중공업 (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 (공덕동)	110111-6770154
분양대행사	(주) 펄빅디앤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22,117호(중동,골든투립)	170111-0640707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 및 계약자는 필히 본 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 견본주택 : 해링턴플레이스 반월당 2차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47(만촌동))

■ 사 업 지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03-4 번지 일원

■ 홈페이지 : <http://www.harrington-bwd2.co.kr>

■ 분양문의 : 053-752-2400

견본주택 :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47(만촌동)



현장 : 대구시 중구 남산동 603-4 번지 외

